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일부개 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 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⑧ 개인성보저리사는 이 법 및 관계 법 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 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 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 명 등을 요구할 권리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주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에 의한 사회적의 권리를 당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1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함의 자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14.>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지원하여야 한다. 공례를 자원할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사회의 무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3. 24., 2023. 3. 14.> ② 개인정보의 취리 및 기업의		
모의 시디 및 모모에 된하여 다른 답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 3. 24., 2023. 3. 14.>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3. 3. 14.>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한다)를 둔다.<개정 2020. 2. 4.>②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제7조의8제3호 및 제4호의 사무 2. 제7조의8제3호 및 제4호의 사무 2. 제7조의9제1항의 심의・의결 사항중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③ 삭제<2020. 2. 4.>④ 삭제<2020. 2. 4.>⑤ 삭제<2020. 2. 4.>⑤ 삭제<2020. 2. 4.> ⑥ 삭제<2020. 2. 4.>	제4조의2(영리업무의 금지) 법 제7조제 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법 제 7조의6제1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1. 법 제7조의9제1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한다)가 조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20. 8. 4.]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정보보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외의원 중 2명은 의외자의 제청으로 2명	
위원 중 2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3명은 그 외의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기측인다. 1.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 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 던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공공기관 또는 단체(개인정보처리자 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에 3년 이	
상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들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 있던 사람	
있고「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 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보이어 보는 기상한다. 의원 인정보보한 기원은 기원은 기원을 모임한 경우 1인정 보한 기원은 기원을 기원을 기원을 기원을 기원을 기원을 기원을 하는 그 이상 공공 기원을 다 되었다. 그 이상 공공 기원을 다 되었다. 기원을 다 하는 1. 이상 공공 1인 이 시라 보고 1인 이 시라 보고 1인 이 시라 1인 이 이 인 이 이 이 인 이 이 이 이 인 이 이 이 이 이 이	
제7조의3(위원장) ① 위원장은 보호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자자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이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있을 때에는 위원되가 미리 정하는 의원이 의원자의 지모를 대해하다.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보호위 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 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 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4.]	
제7조의4(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 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7조의5(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의7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7조의6(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② 제1항에 따른 영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 2. 4.]	제4조의2(영리업무의 금지) 법 제7조제 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법 제7조의6제1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1. 법 제7조의9제1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한다)가 조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본조신설 2020. 8. 4.]	
제7조의7(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제22조에 따른 당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제33조제5호는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및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영언년: 1.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 • 계획 수립 • 집행에 관한 사항 3. 제 기기 기계 기기 기계 기기 기계 기계 기계 기계 기계 기계 기계 기계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수행한다. 1.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계획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3.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 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부쟁의	
기 전 영모의 보호와 된 한 집 합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 제도 · 계획 수립 · 집행에 관한 사항 3.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 · 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 · 협력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 정책 ·	
<mark>문 게이저나 나중에 과장 버려 저게</mark>	
용보에 관한 사양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 •보급, 기술의 표준화 및 전문인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당 · 정색 · 제도 · 실태 등의 조사 · 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 · 보급, 기술의 표준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본조신설 2020. 2. 4.]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 사항 등)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개정 2023. 3. 14.>	제5조(전문위원회) ① 보호위원회는 법제7조의9제1항에 따른 심의 · 의결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따라 의 학회	
1.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 인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문아일 신문위원외(이야 "신문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8. 4.,	
따른 시행계회에 과하 사항	2023. 9. 12.> 1.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분야 2.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및 번령이 개서에 과하 사항	인성하는 분야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 • 운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 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 려하여 구원이 되는 존에서의 위원으로	
6.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의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다하여 구성하기, 신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	
6의2. 제28조의9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원회 위원장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전 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7. 제33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에 관한 사항 8.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	2016. 7. 22., 2020. 8. 4., 2023. 9. 12.> 1. 보호위원회 위원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 는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	
한 사항 9. 제6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	2. 게근 6도 도로 단단 납푸를 요중에 는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 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과	
고에 관한 사항 9의2.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권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고에 관한 사항 10.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사업자단체에 속하거나 그 단체의 추천 을 받은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	
11. 제6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	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 및 공표명령에 관한 사항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23. 9. 12.>	
13.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14. 소관 법령 및 보호위원회 규칙의	제9조(출석수당 등) 보호위원회, 전문위 원회 또는 정책현의회에 출석한 위원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5 개이정보 보증아 과려하여 보증의	제9조(출석수당 등) 보호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정책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법 제7조의9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 에 출석한 사람,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	에 출석한 사람,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사람 또는 정책협의회에 출석한 사람에 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	
라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	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 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l은 신이 • 이격하기 위하여 끡요하 경우 l	제9조의2(정책ㆍ제도ㆍ법령 개선 권고	
기. 전계 증구권, 개인정보 보오에 진단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 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의 의견 청취	의 열사 등) ① 보오귀원되는 답 세/소 의9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정책·제 도 및 법령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	
2.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요구	는 그 내용과 사유 등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0. 8. 4.>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때라야 하다.	제9조의2(정책・제도・법령 개선 권고의 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의9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정책・제도 및 법령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 등을 함께 통보해야한다.<개정 2020. 8. 4.>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의9제5항에따른 권고내용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위하여 관계 기관에 권고사항의 이행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8. 4.> [본조신설 2016. 7. 22.]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의 의견 청취 2.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요구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4.]	[본조신설 2016. 7. 22.]	
[본조신설 2020. 2. 4.]		
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다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은 보 호위원회에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오뉘눤외에 의안들 세의알 수 있나. ③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 바수의 출석으로 개이하고 축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7조의11(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 의결에서 제 적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시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호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지는 기피 신청을 할수 있고, 보호위원회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 기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 기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 기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4.]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 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훤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안 공공기관・법 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	
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 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호위원 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 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4.]	
제7조의12(소위원회) ① 보호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사・반복되 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③ 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의 결한 것은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4) 소위원외의 외의는 구성위원 선원 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7조의13(사무처) 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보호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제7조의14(운영 등)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보호위원회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제8조의2(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의 개인정보침해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의 소관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9조의3(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절차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이하 "침해요인 평가"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법령안을 포함한다)을 통하여도입되거나 변경되는 개인정보 처리를수반하는 정책・제도의 목적과 주요 내용
2.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제도의 도입・변경에 따른 제2항 각 호의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자체 3.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저 도의 도입·변경에 따른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자체 시합 분석 3. 기 도의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ㆍ제 <u>위</u> 도입ㆍ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대책 내액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침해요인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2.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의 적정성
3.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 4. 항 그 밖에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사 4. 그 뒤에 점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 2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법령안에 반영하는 등 권고내용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만, 보호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호위원회는 침해요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보호위원회는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보호위원회는 침해요인 평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수 있다.
⑥ 보호위원회는 침해요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7. 22.]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조(기본계획)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 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기반정보 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기반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 개인정보 보호 교육・홍보의 활성화 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양성 7.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3년마다 법 제9조에 따른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3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2020. 8. 4.>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관련중장기 계획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에 반영할수있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작성 지침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③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제10조(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보호 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보호위원 회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기관・단체 등에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주인 성과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이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시할 수 있다.<신설 2015. 7. 24., 2017. 7. 26., 2020. 2. 4.>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7. 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7. 24.> ⑤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 (1) 보호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다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음 각으의 시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2023. 9. 12.>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보호적이 생형 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성 조치에 따른 개인정보 보처리기기의 설치 ·원학 시한 시한 기사 연기 시한 등의 연구 한 사항 의지정 여부에 관한 사항 의지정 여부에 관한 사항 의지정 여부에 의 유수진을 이 우리 나 사항 등이나 의견의 요구하는 기본계획 의 사항 등이나 의견의을 효율적으로 수에 위한 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자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한 시기관의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와 제2항을 유용한다.이 장 관위원회 "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이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유용한다.의 지원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유용한다.의 지원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유용한다.의 지원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유용한다.의 지원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유용한 기관의 제계 자료의 제출 등을 유용한다.의 지원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유용한다.의 지원에게 자료되어 제2항을 유용한 기관의 제3항 "으로 본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①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업무의수행 및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등을 평가(이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에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다.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그 소속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징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기준・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본조신설 2023. 3. 14.]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기준・방법・절차 등) ① 법 제 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 늗. 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가방공단 그 밖에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 · 공공기관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리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 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 3.른처위관 여부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평가대상, 평가 기준・방법 및 평가지표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수 준 평가 대상 기관(이하 "평가대상기관 "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 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보호위원회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평가대상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경우 그 결과 및 명자료 제1호의 증명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여부등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하기위해 필요한 자료
⑥ 보호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거나 평가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⑦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기관등소관 분야 평가대상기관의 평가준비또는 평가결과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료 되 응은 표정에 따는 시원을 하기 위에 노력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세 붓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르부다 [본조신설 <u>2024. 3. 12.</u>]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모서리사에게 그 순수들 권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지침에따라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있다.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

쓰기.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 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해야 한다. 정신설 2023. 9. 12.> 기 전 1 3 전 2 2023. 9. 14. 8 1.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2.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2. 중의들 명확할 것 3. 그 내용 문구를 사 명확할 것
3.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4.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2023 9 12 5 2023. 9. 12.>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2023. 9. 12 사항에 대한 농의의 의자표의로 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의 대형을 됩니고 이 이 이 기차 기를 확인하는 방법
③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7. 10. 17., 지응을 들한다. 전 2017. 10. 17, 2023. 9. 12.>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민감정보나. 제1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2023.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개정 2023. 9. 12.> ⑤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전자우 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 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한다)을 말한다.<개정 2023. 9. 12.>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동의방법 중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별 업무, 업종의 특성 및 정보주체의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동의방법에관한 기준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개인정보 보호지침"이라한다)으로 정하여 그 기준에따라동의를 받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0., 2017. 10. 17., 2023. 9. 12.>	
	제27조의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지침) 보호위원회는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설치 · 운영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한 기준, 설치 · 운영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법 제 12조제1항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수 있다.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보호 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 의 육성 및 지원 3.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도입・시 행 지원 4.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시행 지원 5.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보호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호에 따라 개인 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 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의 날) ①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9월 30일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보호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14.]		
제14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국제적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한다. ② 정부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한다.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 공 등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제공의 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상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1. 2.상경 3.관우 후 공공기 업무의 |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 필요한 경우 4 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개정2023. 9. 12.> .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2023. 9. 12.> [본조신설 2020. 8. 4.]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신설 2020. 2. 4.>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 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라는 입증 작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신설 2013. 8. 6.>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등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 8. 6.>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대중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를 받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등의를 받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이용 기간 기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보보으로 제공인 이용 기간 모든 물이의의 내용 3. 제공한는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이용 기간 등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3.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기안에는 기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 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 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 3자에 기 시 2022 3 14 5 2020. 2. 4., 2023. 3.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한정한다.<개정 2020. 2. 4., 2023. 3. 14 > 2020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

2. 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고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 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 2020. 2. 4.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 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한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공공기관은 법 제 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2. 칭 3.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 4. :. 5. 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 ·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우에는 그 내용 8.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 만터 인, 등등기관이 답 제18소세2영제5오락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

세3동에 띄는 묘지의 자구 " "은 는 정보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 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 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고로교등법 제80고에 따른 문년 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 8. 6.]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 · 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① 개인 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① 개인 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각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한다.<개정 2023. 3. 14.>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리가 있다는 사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원 수명으로 전하는 사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원 수명의 자가 제1항제 5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보의 주는 마인지 하는 때에는 제1항 대호에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이 연락 지안 보의 무취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이 연락 지안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관하지 아니하다.<신설 2016. 3. 29.> 3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방법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선설 2016. 3. 29.> . <선물 2016. 3. 29. > ④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 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 3. 29., 2023. 3. 14.>
1.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 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 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3. 3. 14.]

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방법・절차) ① 법 제20조제2항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수는 전년도 말이 전 3개월 간 일일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개정 2023. 9. 12.>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한다)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한다)를 처리하는 자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려야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한다. 다만, 법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학 병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 학생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강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 학생일을 받은 남부터 기산하여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열려가 한다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하다는 경우에는 기원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한다 시계된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한다는 기정 2023. 9. 12.>
1. 서면・전자우편・전화・문자전송 정보주체가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 한타 안나.<개성 2023. 9. 12.> 1.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2. 알린 시기 3. 알린 방법 [본조신설 2016. 9. 29.] [제목개정 2023. 9. 12.]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이나 이용・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다 하나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있다.

짜니.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의 범위, 통지 대상 정보, 통지 주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모들 파기월 때까지 모현 학 한다.<개정 2023. 9. 12.> 1.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2. 알린 시기 3. 알린 방법 [본조신설 2016. 9. 29.] [제목개정 2023. 9. 12.] 한다.

제15조의3(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① 법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수는 전년도 말 기준으로 산정한다.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자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자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개인정보를 처리하는자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판른 통지의대상이 되는 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정보주체를 제외한 정보주체로 한다.

정보주체를 제외한 정보주체로 한다.
1. 통지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정보주체
2.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그에 소속된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해당 정보주체
3.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다른 공공기관, 법인, 단체의 임직원 또는 개인의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에 하당 경우 해당 보주체
4.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이용・제공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5.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3.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주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3.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정보의 장보주체 (3.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주시) 공목적 및 세공한 대인정보의 장보는 지원이게 통지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정보의 주원들은 제3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대인정보의 장목 모다만, 「통신비밀보보를 제공받는 제3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대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4.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영 1회 이상 해야 한다.
(5. 서면・전자우편・전화・문자전송등 정보주체가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 점보주체가 함지 내용을 쉽게 확인 점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로 알림 가장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와 기업적보의 이용・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통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년조신설 2023. 9. 12.]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 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 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 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보는 개인정보퍼의을 다른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방법・절차) ①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 리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수는 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다.<개정 2023. 9. 12.>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 보"라 한다)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 "라 한다)를 처리하는 자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해 반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 게 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같이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 기반정보를 제3한 제3한 전기 한 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 등 전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등 제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가 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등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시기 등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인기 등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인기 등의를 받은 달부터 기산하여 연 인기 등의를 된다면 한다는 문자전송 포를 파기를 떼게지 모든 다 한다.<개정 2023. 9. 12.> 1.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2. 알린 시기 3. 알린 방법 [본조신설 2016. 9. 29.] [제목개정 2023. 9. 12.] 한다.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① 개인 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 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개정 2014. 8. 6., 2022. 7. 19.>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 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다만, 기술 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 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4. 8. 6.,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 |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 |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제1항 |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 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 |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 |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 |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017. 4. 18. 2023. 3. 14.> 2017. 4.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____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4. 우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는 경우 제<u>2</u>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경우 6. 세24소세1양세1호에 따라 동의들 받는 경우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8.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7. 4. 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7. 4.
18., 2017. 7. 26., 2020. 2. 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개정 2016. 3. 29., 2017. 4. 18., 2023. 3. 14.>
④ 삭제<2023. 3. 14.>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 2017. 4. 18, 2023. 3. 14.>
④ 삭제 < 2023. 3. 14.>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3호 및 제7호에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4. 18., 2023. 3. 14.> 2017, 4, 18,, 2023, 3, 14.>
⑥ 삭제<2023, 3, 14.>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 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경 2, 14 5 2023. 3. 14.>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 때에는 다음 각을 해야 한다.<신설 에 보다 시작으로 2023, 9, 12.>
1.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2.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명확할 것
3.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4.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 9. 12.> 2023. 9. 12.>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사항에 대한 농의의 의사표의로 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의 대응을 됩니고 등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③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7. 10. 17., 2023 적 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개정 2023. 9. 12.> ⑤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전자우 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 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 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차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3. 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알리고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1인정보거 분실・도난・유출・위조의 비조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의 비조정보가 분실・도난・유출 이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는 계존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6. 3. 29.> 3. 11.> 기반정보이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3. 3. 14.>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생성한 정보 4.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리 사항을 알고 다른 개인정보의 차리의 대한 동의 발은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모유식별정보의 착제 < 2013. 8. 6.>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차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모든 내연정보의 처리하는 모든 나이 따라 기고유식별정보가 분실 • 모든 이에 는 위조 • 변조 또는 해수는 되어 따라 그 고유식별정보가 훼손되지 바라 그 고유식별정보가 해온되지 바라 그 고유식별정보가 해온되지 바라 그 고유식별정보가 해온되지 말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의 보호위원 하여 다시를 당한 사리는 개인정 고리하는 개인적 구민 등 하여 다시를 당한 사리를 하여 다시를 당한 다시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조사하여 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조사하여야한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한다.<신설 2016. 3. 29., 2017. 7. 26.,

2020. 2.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 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 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는 "법 제24조제3항"으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로 본다.<개정 2020.8.4., 2023.9.12.>②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개정 2024 3 12 > 2024. 3. 12.>
1.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2. 보호위원회가 법 위반 이력 및 내용 · 정도,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위험성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3.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5만명 이상의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3년마다 1회 이상 조사해야 한다.<개정 다 1회 이상 조사해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0. 8. 4., 2024. 3. 12.>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조심을 실시한 것으로 본 다. 법 제11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준 평가를 받은 경우 수준평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32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인증을 받은 경우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5조의5에 따른 개인신용정보활용・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당다른 법률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점검이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준하는 것으로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 제3항에 따른 조사는 제2항 각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온라인 또는 서면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 3. 12.> 한 다. 2024 ⑥ 법 제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 관을 말한다.<개정 2017. 7. 26., 2020. 8. 4., 2024. 3. 12.>

8. 4., 2024. 3. 12.>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 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기관	
---	--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 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 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개정 2014. 11. 19,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19,,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 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15. 7. 24.> 24.>

2015. 7. 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세공하여 야 한다.<개정 2014. 3. 24.>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 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 •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3. 24., 2017. 7. 26., 2020. 2. 4.>
[본조신설 2013. 8. 6.]

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하는 암호화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암호화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

1. 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2017년 1월 1일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2018년 1월 1일
③ 보호위원회는 기술적 · 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암호화 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2020. 8. 4.>

[본조신설 2015. 12. 30.]

제62조(업무의 위탁) ① 삭제<2015. 12. 30.>

12. 30.>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대체가 입수단 제공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30., 2017. 7. 26., 2020. 8. 4., 2022. 7. 19.3

19.>
1. 「전자정부법」제72조제1항에 따른한국지역정보개발원
2. 한국인터넷진흥원
3. 대체가입수단의 개발・제공・관리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기관・단체
③ 보호위원회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4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청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30., 2017. 7. 26., 2020. 8. 4., 2022. 7.

19, 2023. 9. 12.>
1. 법 제7조의8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와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와 외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와의 교류・협력
2. 법 제7조의8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정책・제도・실태등의 조사・연구

등의 조사・연구 3. 법 제7조의8제7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보급 4.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 호에 관한 교육・홍보 5. 법 제13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

호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 원

|현
6.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 의 육성 및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 7.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열람 요구의 접수 및 처리 8. 법 제6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된 자 료제출 요구 및 검사 가.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

에

· 대한 기술지원 · 법 제62조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 센터에 접수된 신고의 접수·처리

ᆼ. 제36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 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 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 3.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 3.
14.>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 ·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 ·운영하는 경우 1. 교통전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 ·운영하는 경우 1.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 ·운영하는 경우 1. 교통정보의 수집 한 보를 지장하는 경우 1. 이용하는 경우 보를 이용하는 경우 1. 이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력정 다수가 의 사생활을 현재 기기를 설치 아니는 자살로 하는 시설 등 대인의 사생활을 현재 기기를 성지 아니하다.<개정 2023. 3. 14.> 의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 된처리기기를 설치 · 오영하려는 아니 함께 다음 기기를 설치 · 오영하려는 사람이 되었다.

당당으로 장아는 시설에 내아버는 그디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3. 14.>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 기대적 2022. 2.14.>

명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한다.<개정 2023. 3. 14.>
④ 제1항 각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있도록 설치하는 당한다. 학교 및 군사시설, 국가 중요시설의 경우에는 고려하지 아니하다.
 ** 보고 보고 함께 다른 교육 함께 다른 전하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국가 중요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고 함께 다른 경하는 사항이 모험 함께 다른 전하는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국가 중요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고 함께 다른 경하는 사항 보기 및 장소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고 함께 다른 경하는 사항 보기 목적 및 장소 2016. 3. 29., 2023. 3. 14.>
 ** 보고 함께 다른 경하는 사항 그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목적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보기 가운영자로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로 가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시간 함께 보고 되어 하는 사람들로 무지 아니하도록 제29조 보기 를 임하여야 한다.
 ** 보고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기 운영자 등의 전상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기 등의 자기를 하여야 한다.
 ** 기기 등의 자기를 하여야 한다.
 ** 기기 등의 자기를 하여야 한다.
 ** 기기를 되었다.
 ** 기기를 되었다.

하여야 한다.<개청 2015. 7. 24., 2023

3. 14.>
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제2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제한의 예외) ① 법 제25조제 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랖 다음 라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당세0오에서 대응당당으로 당하는 당 5세0오에서 대응당당으로 당하는 6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3. 9. 12.> 출입자 수, 성별, 연령대 등 통계값 5는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해 촬영 1 영상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 뚜 된 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 5. 29.,

시설을 일한다.<개성 2017. 5. 29,, 2020. 8. 4,, 2023. 9. 12.>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 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 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

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5조제2항 단 서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시설에 고정 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 는 경우 정보주제의 사생활 침해를 집 는 하다 하고 다시되 사용을 다에 들 되 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정하여 그 준수 를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3. 9. 12.> [제목개정 2023. 9. 12.]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 를 거쳐 소계 전문가 있고 해당하는 일이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2.>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설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로누니 되는 2023. 9. 12.> 1. 관계 전문가 2. 해당 시설에 설에 구금되어 9 사람 또는 그 사 . |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 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 2. 하 설에 사람 계인

[제목개정 2023. 9. 12.]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① 법 제 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 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 다)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 · 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아볼 수 있도록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을 마련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 3.

8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 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3. 3.

[제목개정 2023. 3. 14.]

또는 장소 전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 9. 29., 2023. 9. 12.>

삭제 < 2016. 9. 29.> 1. 삭제<2016. 9. 29.> 2.

| 2. 삭제 < 2016. 9. 29.>
| 3. 삭제 < 2016. 9. 29.>
| 3. 삭제 < 2016. 9. 29.>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설치 • 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 제25조제4항 각호의 20.22 0.202 있다.<개정 2016. 9. 29., 2023. 9. 12.>

주 있다.<개정 2016. 9. 29, 2023. 9. 12.>
1.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들 설치하는 경우들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이 불지하는 경우 일시하다라도 일시하다라도 일시하다라도 일시하다라도 일시하는 경우 에 발한 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이 시는 경우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9, 2020. 8. 4, 2023. 9. 12.>
1.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9, 2020. 8. 4, 2023. 9. 12.>
1.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등 이 있는 시한 방법 보기 기운영자의 사업장등 이 라한다 가 전문이 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집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의반일간신문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인터넷신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이 있는 시설 등의 보신는 방법 세계25조제4항 각호의 부분이 법 제25조제4항 각호의 부분이 선설 등 방법

④ 법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란「보안업무규정」제32조에 따른 국 가보안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 9. 29.>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 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3. 9. 12.>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 Ö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 관리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2) 제1항에 따라 마련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법 제30조제2항"은 "법 제25조제7항"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으로 본다.<개정 2023. 9. 12.>
[제목개정 2023. 9. 12.]

제26조(공공기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① 법제25조제8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이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2.>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대정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목개정 2023. 9. 12.]

법제처 3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된다. 이하 같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되다

인 된다. 이야 됩니)를 떨어어지는 아니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 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으로 취기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으로 취기가 활명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함의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하기의 수 등이 기가 되었는 이 기가 되었다. 당양 영상정보처리기기 역사를 불어가 있이 그렇게 함께 관련된 사물의 인명의 구조 나를 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 영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인명의 구조 나를 이 기가 되었다. 함께 관련된 사물의 인명의 구조 대통 명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이 기가 함께 함께 당하고 있다. 집 제 합의 기가 되었다. 집 제 합의 기가 되었다.

니어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고 일더아 만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5조제6항부터 제 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제27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의 예외)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범죄, 화재,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하 같다)의 촬영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27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 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 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 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다만, 드 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 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위원회 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법제처 34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24.>

24.>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선절 2023. 3. 14.>
⑦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소속 직원으로 본다.<개정 2023. 3.

14.>

14.>
③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2,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이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수탁자"로 본다.<개정 2023. 3. 14.>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조치)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스타자/이렇

: 개 관 5.

고반 사양 5.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관안 사항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개인정보 처리 업무 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 탁자"라 한다)가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 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을 말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여야 한

형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3. 9. 12.>
⑤ 위탁자가 과실 없이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할 사항과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독하여야한다.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이전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방법 이어 등이 생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방법 이 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방법 이어 등이 생각하는 경우 생각이 되었으로 생하는 기원 보를 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 의용하거나 지3자에게 제공할수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 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수 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	제29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이전의 통지)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이전하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영업양도자등"이라 한다)가 과실 없이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시수 의다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시수 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는 기가 의원 등의 어느 하다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 제27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 기수 있다.<개정 2020. 8. 4.> 1.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의 보기 위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 2.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 2.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우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급지역으로 기원 각호의 가목・다목 또는 일반주간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조조제1호가목・다목 또는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처리자로 본다.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3.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신설 2020.2.4>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		
인정보처리자는 통계착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수행한다.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절차, 관리・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29조의2(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①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결합전문기관"이라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후 5.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⑥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해야 한다. ⑦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합전문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거나 보호위원회 또는 해당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합전문기관을 지정, 재지정,

의 장이 결합전문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 에 통보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재지 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 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8. 4.]

제29조의3(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 ① 결합전문기 관의 결합 및 반출 등) ① 결합전문기 관에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결합신청자"라 한다)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결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결합신청자 관련 서류 2. 결합 대상 가명정보에 관한 서류 3. 결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결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에 필요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및 반출에 판라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목 에 필요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되시하는 서류 ② 결합전문기관은 법 제28조의3제 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록 해야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보호위원회가 전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하는 면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보호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하는 데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고하시청자는 법 제28조의3제2하 에 들요한 합부를 시원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결합신청자는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를 결합전문기관 보충하려는 경우에는 결합전문기관에 설치된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조치가 된 공간에서 제2항에 따라 결합된 정보를 가명정보 또는 법 제58조의 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결합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결합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3제 2항에 따른 반출을 승인해야 한다. 이경우 결합전문기관은 결합된 정보의회 2항에 따른 반출을 승인해야 한다. 이경우 결합전문기관은 결합된 정보의회 2항에 따른 반출을 승인하기 위하여 반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1. 결합 목적과 반출 정보가 관련성이었을 것 2.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없을 것 2.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없을 것 3. 반출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이 다. 지 3. 반출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이 있을 것 ⑤ 결합전문기관은 결합 및 반출 등에 필요한 비용을 결합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필요한 미용을 걸합신청사에게 청구일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명정보의 결합 절차와 방 법, 반출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8. 4.] 신<u>설</u> 2020. 8. 4.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임무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8조의 에 대의 기원정보 및 가 연청보체 기사는 제18조의의 에 대의 가영정보 및 가 연청보체 기사는 제18조의의 에 대의 기원정보 및 가 연청보체 기사는 제18조의의에 대의 기원정보 및 가 연청보체 기사는 제18조의의 대의 인생 대를 원래의 시원대로 복용하기 위한 구가 정보은 변조 또는 제26자의 항문을 반접으로 전하다 이 조에서 "주가정보"라 한다는 제26자의 3 1 4.9 2023 3 1 4.9 2023 4 1 1 1 2 을 발로로 생활수 있는 다 1 1 1 2 을 발로로 생활수 있는 대의 전성 화보고 조치를 하더야 다는 "개정 2023 3 1 4.9 2 2 보는 지 1 1 1 2 을 발로로 생활수 기정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등) ①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본조신설 2020. 2. 4.] 제28조의6 삭제 제28조의7(적용범위)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 1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	를 경우 처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 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3. 3. 1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가명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파기한 보면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본조신설 2020. 2. 4.]	안나)에 내아너 나음 각 오의 안신성 확 보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1. 2. 2., 2023. 9. 12.> 1. 제30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2.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다만, 추가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3.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분리.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가명정 보를 취급할 자를 추가로 둘 여력이 없 보를 취급할 자를 추가로 들여 어려우 당한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 어려우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한의 기리 일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한 기리 이어로 보관하는 전문의 보유 현을 관리 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오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등의 기명정보 처리의 목적 2.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 2. 가명정보의 이용제공받는 자 5. 가명정보의 처리의 막의 4.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5.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 4.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5.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 4.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지 5.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 4. 제3가 제공 시 제공받는 지 5.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 4. 제3가 제공 시 제공받는 지 5.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 4. 제3가 제공 시 제공받는 이용하다	
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신설 2023.3.14>	(기) 개인정보시디사는 제28소의2 또는데28소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 · 파기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4.> 본조신설 2020. 2. 4.] 제28조의6 삭제 제28조의6 삭제 제28조의6 삭제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데28소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데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처리 위탁 • 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 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모두한 경우 당구 .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 . 인증받은 사항을 개인정보가 이전 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29조의9(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 및 되 조치 지 .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 |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이 없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 |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 |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 |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u> </u> 일본이 한다) 4. 개 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5.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관련한이 법의 다른 규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의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제월하여지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제29조의7(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 • 보관 시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 법 제28조의8제1항제3호나목에서 "전 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제29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인증)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8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인증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제34조의6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의 평가
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의 국외 이전 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국외이전전문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3. 정책협의회의 협의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8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인증을
고시할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유효 기간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고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9. 12.]

제29조의9(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 28조의8제1항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가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처리위탁 · 보관(이하 이 장에서 "이전"이라한다)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이하 "이전대상국등"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라다 한다 문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만 사망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국외이전전문위원회의 평가 2. 정책협의회의 협의

[본조신설 2023. 3. 14.]

2. 정책협의회의 협의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정을 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등으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이전받는 국 외 이전의 조건 등을 이전대상국등별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인정기간, 별로 일리 정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정을 한 경우에는 인정 기간 동안 이전대상 국등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법에 따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정체계,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범위, 피해무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정체계,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범위, 피해는 제 절차 등의 수준이 변경된 경구 교해 이전대상국등의 의견을을 취소하거 나 대용을 변경할가 제1항에 따른 인정을 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인정을 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인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호위원회 인터 너의 보호위원회가 제1하고 보호위원회 인터 너의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전대상국등에 대한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고 신한다. [본조신설 2023. 9. 12.]

제29조의10(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보호조치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제2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각호의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전받는자와 미리 협의하고 이를 계약내용 등에 반영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12.]

법제처 4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8조의9(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명령)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계속되고 있거나 추가적인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28조의8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이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비하여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지 아니하여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경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중지 명령을 받은 병부터 7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중지 명령을 받은 병부터 7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중지 명령의 기준, 제2항에 따른 병목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제29조의11(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7 준 등)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 9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할 것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명령의 기** 제28조의 국외이전을 고급 그 고려해야 1. 국외로 이전되었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개인정보의 유형 및 규모 2. 법 제28조이오펜소화 [본조신설 2023. 3. 14.] 지도 될더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9. 12.] 제29조의12(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 ① 법 제28조의9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 제기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하다 [본조신설 2023. 9. 12.<mark>]</mark> 제28조의10(상호주의) 제28조의8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 하는 국가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 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 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법제처 4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8조의11(준용규정) 제28조의8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를 준용한다. 이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이전받은 자"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자"는 "제3국에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자"로 본다.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법제처 4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는 "법 제24조제3항"으로, "개인정보"는 "고유식 2020. 8.4 8. 4., 2023. 9. 12.>
②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개정 2024. 3. 12.>
1.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2. 보호위원회가 법 위반 이력 및 내용
• 정도,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3.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과하여 고유신별정보를 처 조시기 로마이 그는 다 한명 이상의 3.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3. 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3년마다 1회 이상 조사해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0. 8. 4., 2024. 3. 12.> 2017. 7. 26., 2020. 8. 4., 2024. 3. 12.>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항에 다한 점검이 일루어진 것으로 본 제3양에 따른 조사들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3, 12.>
1. 법 제11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32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인증을 받은 경우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5조의5에 따른 개인신용정등 한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안전활용・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안전활용・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안전 점검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관계 당한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하는 이 점검이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준하우 합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하는 기원 기관의 장의 다른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호의 제3항에 따른 조사는 제2항 각 호의에게 온라인 또는 서면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생명 2024, 3, 12.> 2024 다.<개정 2024. 법 제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청하는 천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 관을 말한다.<개정 2017. 7. 26., 2020. 8. 4, 2024. 3. 12.>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른 한국인 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넷인능권(기기 는한다) 합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설 |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 |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할비 회카 기관 [전문개정 2016, 9, 29.]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3. 9. 12.>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

법제처 44 국가법령정보센터

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 글. 제2 른 조치 부 사항 2. 개인 부 사항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 · 변경 · 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 · 시행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접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수단 적용 기준의 설정 및 운영다.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조치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기기에 대해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랜섬웨어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여부를 항시 점검ㆍ치료할 수 있도록하는 등의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의실치 ·운영과 주기적 갱신 · 점검 조치 7.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등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 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에 관회가 정하여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 의 사용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시디 당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 2020. 2. 4,

7. 3. 14. 7 개인정보의 개인정보의 개인정보의 처리 처리 1. 개인성모의 서리 녹석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3의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

기리는 기년 이도의 파기르기 못 파기당 법(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 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 급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

한다)

근거와 보손하는 개인성보 항목을 포함한다)
3의3.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의2.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업무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명 가용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웅우에만 정한다)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수집하는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 밖에 개인정보기가 개인정보 처리에 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 대통령이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 보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여 이 기의로 처리받침이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받침이 내용과 개인 된 처리받침이 내용과 개인 기의 되었다. 기의 전보 처리받침이 내용과 개인 기의로 처리받침이 내용과 개인 기의로 처리받침이 내용과 개인 기의로 보지라면 있었다. 기의 기의로 처리받침이 내용과 개인 전보 처리받침이 내용과 개인 전보 처리받침이 내용과 개인 전보 처리받침이 내용과 개인 전보 처리받침이 내용과 개인 기의로 보지라면 있었다. 기의 전보 처리받침이 내용과 개인 기의 전보 처리받침이 내용과 개인 기의로 보지라면 있었다.

명령으로 성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 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4.> 2020. 2. 4.>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제공의 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개정2023. 9. 12.> 2023. 9. 12.>

[본조신설 2020. 8. 4.]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 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3. 9. 12.> 면해야 한다.<개청 2023. 9. 12.>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 에 대한 소설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 관리 적 및 물리적 조취 정 및 물리적 조취 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마련한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공개 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법 제30조제2항"은 "법 제25조제7항 "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으로 본다.<개정 2023. 9. 12.> [제목개정 2023. 9. 12.]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6. 9. 29., 2020. 8. 4., 2023. 9. 12., 2024. 3.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법 제28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라 개

법제처 47 국가법령정보센터 2. 법 제28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이전의 근거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사항
3.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국외에서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결접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인 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국가명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어느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한 한다.
3. 제2항에 따라 인터넷홈페이지에 가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어느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한 한다는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망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경우만 해당한다)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전우만 해당한다)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토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전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 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실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정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신는 방법
4.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법제처 48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 보 처리방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청보처리자에게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3.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②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제31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대상 및 절차)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 30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대상을 선정한다.<개정 2024, 3, 12.>
1.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및 매출액(매출액을 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말하며, 이하제32조 및 제48조의7에서 "매출액등"이라 한다) 규모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의 법적 근거 및 방식4. 법위반행위 발생 여부5. 아동・청소년 등 정보주체의 특성 기안정보처리자에게 평가 대용・일정 및 구도에는 평가 개시 10일 전까지 해당 및 전체 기반정보처리자에게 평가 내용・일정 및 철차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통보해야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법 제30조의2에 따른 기 기정보처리방침이 평가에 필요하경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법 제30조의2에 따른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사항 외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위한 세부적인 대상 선정 기준과 절차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9. 12.]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있다.<개정 2023.3.14.>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신설 23. 3. 1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 3. 14.> 14.>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
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기 시행 6. 개 7. 그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3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의 3 2022 3 14 5 정 2023. 3. 14.>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 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 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 치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 2023. 3. 14.>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 정보의 교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협의회를 구성 • 운영할수 있다. 2023. 3. 14. > 수 있다.<신설 2023. 3. 14.>
③ 보호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3. 3. 14.>
⑤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제3항에 따른 업무 및 제6항에 따른 독립성 보장 등에 필요한사항은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복개정 2023. 3. 14.]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의 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함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및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로 함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교려사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개인정보 보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하게 하당이 따른 개인정보 보호백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백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학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개정 2023. 9. 12.>
[본조신설 2020. 8. 4.]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입 법 제31조제1항 단서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기본법」 제31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한 업무"란 다음 각호와 같고 > ② 법 제31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한 업무"란 다음 각호와 같고 > 1.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인적 · 물적 자원 및 정보의 관리 기난 개인정보의 파기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및 정보의 관계 구분에 따라 기원하는 경우에는 가은 우원을 무원이다. 기관 및 장상하는 국가 관의 등이 상당하는 국무원 의등 가 교위원회정이라는 경우무원의 정(長) 기관 및 중앙당적이 장당하는 모든 외에 정무직공무원원이라는 또는 외에 정무직공무원원이라는 또는 외에 정무직공무원원이라는 모든 국가기관 외의 장무원을 무원인 다. 가목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무원이는 가목 외에 장무직공무원을 무원이는 가목 외에 장무직공무원을 가 가의 공무원을 가 가의 가의 가관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처리 무원 되어 가 기관의 기관이 개인정보처리 무원 의 가 무부터 다목까지의 가관을 포함한다):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처리 포함한다):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처리

포함한다):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마. 시・도 및 시・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바. 시・군 및 자치구: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사. 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해 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다만,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직원을 말한다.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 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 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 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김공) 된다. 2. 공 니.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다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업주 또는 대표자 .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 .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보 장) 상)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3항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사람 중 별표 1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개인정보 보호책임 자로 지정해야 한다.<개정 2024. 3. 12.> 1. 연간 매출액등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뭐 의료기관은 및 「의료법 제외한다) 가 ·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기. 3년 8 에용의 용포무세에 된어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 는 자 나.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 는 사 나.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 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2.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 생 수(대학원 재학생 수를 포함한다)가 2만명 이상인「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 8병의 병원 압당원
4. 공공시스템운영기관
⑤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법 제31조제3항의 업무를 원활히 수 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등 지 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2024. 3. 12.> 2024. 3. 12.>
⑥ 개인정보처리자(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4 2024. 3. 12.>
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접근 보장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결과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표자 또는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수행에 적합한 조직체계의 마련 및 인적・물적자원의 제공 자원의 제공 [시행일: 2024. 9. 15.] 제32조제4항제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 회의 사업 범위 등) ① 법 제31조제7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 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 연구 및 수립 _ 개인정보 침해사고 분석 및 대책 연 고 그 그 그 전에 전 전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 운영, 업무 수행 현황 등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 등 개인 정보 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및 전문성 향상 고 그곳 그러서의 세년으로 그로 그용 전문성 향상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의 조사, 분석 및 및 선문성 향상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주요 동향의 조사, 분석 및 공유
6.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초신설 2024. 3. 12.] [종전 제32조의2는 제32조의3으로 이 <2024. 3. 12.>]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하여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3.

제31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제31호세38에 따른 개한경도 모모 책임자의 업무 2.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 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3. 제63조제1항에 따른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 업소가 있어야 한다.<개정 2023. 3.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국 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 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하여야 한다.<개성 2023. 3. 14.>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3023. 3.14.>

______ .<개정 2023. 3. 14.> [본조신설 2020. 2. 4.]

[제39조의11에서 이동 <2023. 3. 14.>]

제32조의3(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 도를 말한다)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 상인 자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2

이번 자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 인정보가 저장 • 관리되고 있는 국내 정 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 인 자 3. 법 제63주제1하이 ~

인 자
3.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로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전년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9. 12.] [제32조의2에서 이동 <2024. 3. 12.>]

법제처 5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①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 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 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0 17. 7. 26., 2020. 2. 4.>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 항목 3. 의 의 항복
4.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 기 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3. 14.>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형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조사 및「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조사이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이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및 보호위원회는 필요하면 제1항에 따 [영모파일) 보호위원회는 필요하면 제1항에 따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여부와 그 내용 - 검토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선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3. 3. 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2023. 3 4, 2023. 3. 14. 9 ④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 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누구 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 7 20 2013. 3. 23., 2014. 11. 19., 있다.<개성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⑤ 제1항에 따른 등록과 제4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등) ① 개인정보파일(법 제32조제2항 및 이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법 제32조제1항 및 이 영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 후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2023. 9. 12.>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공개하는경우 이를 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2023. 9. 12.>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을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일력의 조치 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하여 인 증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2020 2. 4.>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3년으로 안나.
③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0. 2.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3. 세88에 되는 도 등 등 된 경우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실효성 유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사우관리를 실시아여야 안나.<개성 2017. 7. 26., 2020. 2. 4.>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인증, 제3항에 따른 인증 취소,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및 제7항에 따른 인증 심사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2020. 2. 4.>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위하여 필요자격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위하여 필요자격 등에 관하여는 전문성과 경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그 밖에 개인정보 관리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안전성 확보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34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 · 방법 · 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제 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적 · 기술적 · 물리적 보호대책의 수립 등을 포함한 법 제 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을 7020 8 4 2023 9 12 > |2020. 8. 4., 2023. 9. 12.>
② 법 제32조의2제1항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및 제34조의3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34조의6에 따른개인정보보호 인증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과"이라 하다에 제축하였다. 2020. 8. 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24 3 12 > .<개정 2024. 3. 12.> 1. 인증 대상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목록 숙독 2.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는 방법과 절차 3.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보호대책 구현과 관련되는 문서 목록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과 인증의 범위 및 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서를 범위 한다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 (4) 법 세32소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는 제34조의8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이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5)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인증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아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신청, 인증심사, 인증위 원회의 설치 • 운영 및 인증서의 발급 등 개인정보 보호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4.> [본조신설 2016. 7. 22.]

제34조의4(인증취소) ①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 34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 32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 고, 관보 또는 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게시해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0. 8. 4.> [본조신설 2016. 7. 22.]

제34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①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는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법 제32조의2제3항 각호의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개정 2017. 7. 26., 2020. 8. 4.>[본조신설 2016. 7. 22.]

제34조의6(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 ① 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대통

관) ① 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영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각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6. 9. 29., 2017. 7. 26., 2020. 8. 4.> 1. 한국인터넷진흥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법인, 단체 또는기관 중에서 보호위원회가 지정·고시하는법인, 단체 또는기관가. 제34조의8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인증심사원 5명이상을 보유할 것나. 보호위원회가 실시하는업무수행요건·능력심사에서 적합하다고인정받을것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법인, 단체또는기관의 지정과 그 지정의 취소에필요한 세부기준 등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고시한다.<개정 2017. 7. 26., 2020. 8. 4.> [본조신설 2016. 7. 22.]

제34조의7(인증의 표시 및 홍보) 법 제 32조의2제6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받은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고시하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의 범위와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제34조의8(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①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7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인증심사에 필요한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7항에따라 인증심사원이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 함이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이다음 자격을 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자격을 취득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와 관련하여 금전, 금품, 이익 등을 부당하게 수수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 교육과정의 이수, 인증심사원자원자격의 부여 및취소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고시한다.<개정 2017. 7. 26, 2020. 8. 4.>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4., 2023. 3. 14.>
②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설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를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평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신설 2023 ③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4. 기반에도 말로 걸었으므로 하다. 2023 그 귀함 경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 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 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제32조제 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a) 보호위원회는 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육성, 영향평가기준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기준의 11 10 2017 7 26 2020 2 4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7)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23. 3. 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평가기관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향평가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⑧ 보호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3. 3. 14.> ③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기준·방 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3.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법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파일을 먼한 개인정보파일을 말한다. 1. 구축 • 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 구축 • 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구축 • 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3. 구축 • 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3. 구축 • 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4. 법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기관에 관한 개인정보 급색체계 등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대상 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6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2. 2017. 7. 26. 2020. 8. 4...</p> 입무 나. 「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을 포함한 다)의 구축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분석ㆍ평가와 이에 기초 한 정보 보호 대책의 제시 업무를 말한 다. 이하 같다) 다. 「전자정부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 팅 업무 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 업에 해당하는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 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모든 및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2.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관련된 분야에 서의 업무 경력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 3. 다음 각 목의 사무실 및 설비를 갖춘 범인 카 가. 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를 위한 설 비를 갖춘 사무실 나. 기록 및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 나. 기독 및 자료의 한편한 현니를 포한 설비 ②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기 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3. 14.>
①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첨부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2020. 8. 4.> 1. 정관 2. 데표시기 68 3. 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4.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보호위원회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신청인에게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출입국관리법」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호의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한다. 고시된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4, 2014. 11. 19, 2017. 7. 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1. 평가기관의 명칭 • 주소 및 전화번호 와 대표자의 성명
2. 지정 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 그 조건의 내용 이 법 제33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3.9.12.>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3. 9. 12.>
1. 제6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상계속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영향평가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38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영향평가서 등 영향평가 업무수영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은 지정된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고시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시점된 경우 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2020. 8. 4.>
1.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3. 평가기관을 양도 양수하거나 합병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평가기관을 양도 양수하거나 합병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평가기관을 양도 영수하거나 합병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평가기관을 양도 중전 제36조는 제 제6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삭제<2023. 9. 12.> [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 37조로 이동 <2023. 9. 12.>] **제37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법 제 3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밀 다.

법제처 57 국가법령정보센터

다. 1...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 전염영로 모든 고규칙들영로의 ^ 여부 2. 개인정보 보유기간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 36조로 이동 <2023. 9. 12.>] **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① 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기준 (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6. 7. 22., 2023. 9. 12.>
1. 해당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는 개인정보의 종류 · 성질, 정보주체의 수 및그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2.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6항(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수준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가능성
3.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별 조치여부 가능성
3.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별 조치여부
4.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의무 위반 요소에 관한 사항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향평가를이뢰받은 평가기관은 평가기준에 따라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한 개인정 비 치쉐이 의허요의을 부선 명가하호 대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 · 평가한 후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제3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 또는 변경하기 전에 그영향평가서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한다.<개정 2023. 9. 12.>
1. 영향평가의 대상 및 범위
2. 평가 분야 및 항목
3.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평가 4. 제3호의 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한 내용 및 개선계획
5. 영향평가의 결과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요약한 내용
③ 보호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제6호에 따른 영향평가서 요약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23. 9. 12.> ④ 보호위원회는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 및 영향평 가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 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2023. 9. 12.>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3. 3. 14.>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연락처 2. 기기 등을 지하고 되었다. 기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인당 경우 기기 등을 되었다.

인고 등을 접구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④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 본지 및 제3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3. 3. 14.>

, ________로 정한다.<개정 2023. 3. 14.> [제목개정 2023. 3. 14.]

제39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① · 제39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① · 전보가 분실이하다 이 조 및 제40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로 72시간이 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하는데 없이 보도 하나에 법제34조제1항 각 호의 아는 경우에는 하나에 해당하는 지체 않고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 없이 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 없이 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 없는 지하다 이 된 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출 급한 보고 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출 이 된 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출 이 된 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출 이 된 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통지 기가 의료한이나 그 바에 부름지하다. 주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통지하다. 지 필요한이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는데 지 기인정보이 된 무하고 개인정보는데 제 34조제1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가 유형이 된 사람이 관한 경우 보안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기가 위한 기기 위한 및 지 함이 보다는데 지 3호의 사라이 되는 기의 하고 보다는데 지 34조제 1항 및 제 2항의 통제의자의 이 일본 기가의 함의 및 제 2항의 통제이 되는 기의 사람이 되는 기의 가는다음 가지 아니라는 의 있다. [제 40조에서 이동, 종전 제 39조는 제 40조로 이동 <2023. 9. 12.] [제 40조에서 이동, 종전 제 39조는 제 40조로 이동 <2023. 9. 12.] [제 40조에서 이동, 종전 제 39조는 제 40조로 이동 <2023. 9. 12.] [제 40조에서 이동, 종전 제 39조는 제 40조로 이동 <2023. 9. 12.] [제 40조에서 이동, 종전 제 39조는 제 40조로 이동 <2023. 9. 12.] [제 40조에서 이동, 종전 제 39조는 제 40조로 이동 <2023. 9. 12.] [제 40조에서 이동, 종전 제 39조는 제 40조로 이동 <2023. 9. 12.] [제 40조에서 이동, 종전 제 39조는 제 40조로 이동 <2023. 9. 12.] [제 40조에서 이동, 종전 제 39조는 제 40조로 이동 <2023. 9. 12.] [제 40조에서 이동, 종전 제 39조는 전 5의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9. 12.] [제 40조에서 이동, 종전 제 39조는 제 40조로 이동 <2023. 9. 12.] [제 40조에서 이동, 종전 제 39조는 전 5의 수 있다. [전문가장 2023. 9. 12.] [제 40조에서 이동, 종전 제 39조는 전문가장 2023. 9. 12.] [제 40조에서 이동, 종전 제 39조는 전문가장 2023. 9. 12.]

제40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이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천명 이상이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2.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 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2. 민감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도등이 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기관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1 전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1 전에 의해 개인정보기 위해 개인정보기 위해 기안되었다면 의해 개인정보기 위해 기안되었다면 의해 개인정보기 위해 기안되었다면 의해 기안되었다면 의해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신고해야 하며,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③ 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각각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9. 12.]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39조로 이동 < 2023. 9. 12.>] 제40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 2023 * 302 *	
차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 정보,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개인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公衆)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 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개정 2023. 3. 14.> [본조신설 2020. 2. 4.] [제39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 2는 삭제 <2023. 3. 14.>]	제40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 차단 요청 기관)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이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열라이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

나.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익을 누ం의 " 느 경우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 에 ズフ

하

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 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 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등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법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답 및 철차에 건이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다음 각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 한다.<개정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

17. 10. 17.>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의 목적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 2. 3. 4. 5. 용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일 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 의 사장 10 17

비하여 어렵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17.>
1.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것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의 지속적운영이 곤란한 경우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할 것 4 기안정보의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이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용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다가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열람하구선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보호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열라요구서를 해당 공공기관에 이송해야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2020. 8. 19., 2017. 7. 26., 2017. 10. 17., 2020. 8. 4.>

19, 2017. 7. 26., 2017. 10. 17., 2020. 8. 4.>
④ 법 제3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다.
다.<개정 2017. 10. 17.>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개인정보를 열람할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제42조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중일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시간 및 장소 등(제42조제1항에 따라열람 요구 사항중일부만을 열람하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포함한다)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고시하는 열람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즉시 열람하게하는 경우에는 열람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즉시 열람하게하는 경우에는 열람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즉시 열람하게하는 경우에는 열람통지서 발급을 생략할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2020. 8. 4.>

제42조(개인정보 열람의 제한 · 연기 및 거절)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제 1항에 따른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 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 행사 지원 2.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전송시스템의 구축 및 표	
지성을 얻어야 한다. 1.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 행사 지원 2.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 하 개이저납 저소시스템이 그축 및 표	
문화 3.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	
4. 그 밖에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	
(호 성아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 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를 전송・관리・분석할 수 있는 기술수준 및 전문성을 갖추었을	
〉 2.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 는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을 갖추었을	
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재정능력을 갖추었을 것 ③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지정 5 조의 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1. 제35조의 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기관 기원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하기 위한 기계인정보 전송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하기 위한 기계인정보 전송시스템의 구축 기계 기계 전문 기계 기계 전문 기계	
2.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⑤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을지하여야 한다. ⑥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하 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유건의 서부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군포인결 2023, 3, 14.]	

제35조의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① 보호위원회는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제 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 문기관 현황, 활용내역 및 관리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고효율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송지 한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고호율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이 보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정보 전송 있다. 전용을 위하여 및 해당보관리 전문기관에서 가능한 개인정보의 전송이력 관리 등 지원 시조 및 해당 시호 등 기능 전송지원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의 위하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서 구호 원조 전송지원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하고 있는 전송 시스템을 우조 인계증앙해정기관의 장 및 해당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서 등합할 수 있다. 이 경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자연에 협의하여야 보관리 전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보관리 전문기관과 가인정보 전송지원을 무성되었다. [본조신설 2023. 3. 14.]

지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주에는 가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우이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우이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우이는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우이는 다른 명시되어 있다. 따른 명시되어 있다. 따른인법가 수집 대상으를 모구할 수 없다. 따라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인법병이 목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경우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있는 경에 목별한 절차가 제2항에 따라 가 제2항에 따라 기원되는 시계한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 하당된 때에는 지체 양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되었다.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함보수에 하당의 확인에 되었다. 이 기원하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치를 함때 필요하면 해당이 확인에 되었다. 등이 제1항・제 요구, 등지 방법으로 정한 시항은 대통령이 사항은 대통령이 있는 작제 요구, 대통령이 되었다.

17.>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2020. 8. 4.>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개정 2023. 3. 14.> 전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개정 2023 3. 14.> 선명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시 의투를 준수아기 기 경우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입일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 이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 3.14.> 월 2023. 3. 14.>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개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3023. 3. 1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동의 철회, 처리정지의 모구, 동의 철회,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때에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하되, "열람"은 "처리 정지"로 본다. 《개정 2017. 10. 17.>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가 10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같은 항단서에 해당하여 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2020. 8. 4.>

제46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정・삭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 또는 동의 철회 등의 요구(이하 이 조, 제47조 및 제48조에서 "열람등요구"라한다)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등요구를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4., 2023. 9. 12.>
②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다만, 해당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수 없거나 정보주체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 등) ① 정보주체는 완전히 장보주체의 권리 등) ① 정보주체는 완전히 양보주체의 권리등) ① 정보주체는 완전의 양보주하는 결정(「행정기본법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화적 처분 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시스템을 포함한다)이 조에서 "자동화 결정 마라 한다)이 자신의 권리우에는 결정 "이라 한다)이 자신의 권리우에는 경기 등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제15조제1항제15조제1항제15조제1항제15조제1항제15조제1항제15조제1항제15조제1항제15조제1항제15조제1항제2호 인정보주에 따라 이루 지원병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의 경기 등을 등을 전기 하는 자기 보기 보기 보기 보기 사용하고 의 기신정보자의 학자 사용하고 된 결정의 이 따라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하고 의 기신정보자 개인정보자 의 의 일하여 따라 정보주체가 쉽게 의 기신를 보지 되는 장보인 기신을 경기 시원 기신을 경기 가능을 정보 기신의 모든 기기 등을 되었다. 지원에 자동화된 결정의 기신 등을 경기 가능을 등의 요구하는 절차 및 방법, 조치, 자보가 사용을 등의 요구하는 절차 및 방법, 조치, 자보가 등의 요구하는 절차 및 방법, 조치, 자보가 등을 등의 요구하는 절차 및 방법, 조치, 자보가 등을 등의 요구하는 절차 및 방법, 조치, 자보가 등을 등의 요구하는 절차 및 방법, 조기 등의 요구하는 절차 및 망점 등의 요구하는 된 공기 등의 요구하는 된 공

제44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등 요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 보주체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화된 결정(이하 "자동화된 결정"이 라 한다)에 대해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하여 제44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정보주체는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개인정보처 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설명 또는 검토 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의 설명 또는 검토 요구는 개인정보처리자 가 마련하여 제44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한다.
1. 해당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 및 처리과정 등에 대한 설명
2.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추가 등의 의견을 제출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해당의견을 자동화된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주체의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설명 및 검토요구(이하 "거부・설명등요구"라 한다)의 방법과 절차를 개인정보처리자가마련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열람 요구"는 "거부・설명등요구"로본다. 한다

[본조신설 2024. 3. 12.]

제44조의4(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제37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알려야 할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등의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그 목적 및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의 범위 1. 사동와된 설명이 어무어 보고 나는 하고 목적 및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의 범위
2. 자동화된 결정에 사용되는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과 자동화된 결정의 관계
3.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및 주요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절차
4.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 민감정보 또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목적 및 처리하는 개인 정보의 구체적인 항목
5.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거부・설명등요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 및 절차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정보주체가 해당 내용을 공개할 때에는 정보주체가 해당내용을 심게 일 수 있도록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정보주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 학기를 나도표 등 시각적인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12.]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 35조의2에 따른 전송, 제36조에 따른 정정 · 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 · 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수 있다.<개정 2020. 2. 4., 2023. 3. 14 >

14.>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의 경우에는 전송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설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23. 3. 14 >

14.>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 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 람등요구의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 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아 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5)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 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 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 야 한다.

제44조의3(거부・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가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화된 기 세44소의2세1성에 백다 시호되는 결정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정 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했당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않 보주체에게 알려된 경우 한다. 의하가 경우면 모두 제에 이한 전 보는 2. 인제 2항에 대한 보는 경향다. 원이 되는 2. 인제 2항에 대한 보는 경향 제 44조의 2제 2항에 대한 보는 경향에 가장 열을면 모고해야 보는 경향에 가장 결을면 모고해야 보는 경향에 대한 사람이 하지 함은 보고해야 보는 경향에 대한 보는 경향에 대한 보는 경향에 대한 보는 경향에 대한 경향을 보고해 가는 경향에 대한 경향을 보고해 가는 경향에 대한 경향을 보고하게 가는 경향이 되었다. 된 경향이 되었다. 된 경향이 되었다. 된 경향이 가장 보는 경향이 되었다. 된 경향이 가장 보는 경향이 가장 보고 함께 가장 보고 하는 가장 함께 가장 보고 함께 가장 조치

제45조(대리인의 범위 등) ① 법 제 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제47조(수수료 등의 금액 등) ① 법 제 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바에 따른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우송료를 하게 된 사유가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우송료를 하게 된 사유가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우송료를 바게 된 시유가 그 가인 된다. 학의, 법원, 헌행정기관 및 그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리급수다되는 지방자치다라 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리급수다도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0로 보는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0로 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0로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2.> .<개성 2023. 9. 12.>
1.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
2.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 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수 없다.
② 삭제<2015. 7. 24, 2023. 3. 3. 14.> 7. 24., 2023. 3. 14.>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한다.<신설 2015. 7. 24.>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제39조의2(법정순해배상의 청구)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가인정보자 불실 · 도난 · 유출 · 3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 을 소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 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 당한 소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 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需)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 본조산철 2015. 7. 24.] 제6장 삭제 〈2023.3.14> 제39조의(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순해배상정구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정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순해의 증명 또는 논송 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 장당 시장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얻은 자 가 그 자료의 제품을 경당한 이 유가 있으면 괴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품명령을 받은 자 가 그 자료의 제품을 경당한 이 유가 있으면 괴리하지 아니하다. ③ 제3명 제1를 물받는 자 가 가 다 자료의 제품을 가부할 정당한 이 유가 있으면 괴리하지 아니하다. ③ 제3한에 따른 제품명령을 받은 자 가 가 가로의 제품을 변당하기 위하 역 자료의 제시를 물받는 유명에는 역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경 우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다를 위한 이 무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다를 위한 이 무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기계형에 따라 제출되었어 바로 이야 할 자료 가 ' 부정정병망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 관한 사람이 등된 또는 손하에의 산정에 난 논시 편요한 경우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 보안 시급에 등된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 보안에 된 등의 경우에는 역 자료의 제기를 명임 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 보안시 편요한 경우로 보지 아니라다 이 경우 법원은 피출 등의 되어 생명하는 나는시 편요한 경우로 보지 아니라다 이 경우 법원은 피출 명임의 목된 내에서 등의 병원은 제출명명의 목된 나에서 등의 병원은 제출명명의 목된 나에서 등의 병원은 제출명명의 목된 나에서 등의 병원은 제출명명의 목된 나에서 등의 병원은 제출 보다 사람들을 수 있는 등록 함께 등록 보다 하나하다 이 경우 병원은 제출 명임의 목된 나에서 등의 병원은 제출 및 함께 등록 기계를 받았다. 등록 기계를 위해 등록 기계를 기계를 기계를 기계를 기계를 기계를 기계를 기계를	
제39조의3(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 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 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에 해당하나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하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발원이는 되었다. 의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수이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종결되기 전까지 그 상의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6장 삭제 <2023.3.14>
법을 기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 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출명령을 받은 자 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 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 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 여 자료의 제시를 말할 수 있다. 이 경 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 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에 해당하 나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업이 또는 열람할 수 있	제39조이3(자료이 제출) ① 번원은 이
는 작님을 시청아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로 증명	제6장 삭제 <2023.3.14> 제6장 삭제 <2023.3.14> 제39조의3(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성인은 이 선인 선택 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대 상대 상

·	
제39조의4(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시점까지 다음 각 호의 자가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2. 당사자를 위하여 해당 소송을 대리하는 자 3.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일게 된 자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 표자를 말한다) 2. 당사자를 위하여 해당 소송을 대리	
(2) 세1양에 따는 엉덩(이아 미월유시 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하여야 한다.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하여야 한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 야 할 증거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명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 야 할 증거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법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 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은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2. 비밀유시명령의 내장이 될 영업비밀 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	
실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은 제4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⑥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수 있다. [전문개정 2023. 3. 14.]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⑥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3. 14.]	

제39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39조의4제2항각 호의 사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실이나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한다.	
제39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소송인지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소송인지명령이 내려진소송인지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소송인지의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따라 열음이 되었던 경우로서 당사자로 제한하는 끝당이 있었던 경우로서 당사자로 제한하는 결정이 있었던 경우로서 당사자로 제한하는 결정이 있었던 경우로서 당사자로 제한하는 길람이 청구를 하였으나 기재부분의 열람이 청구를 하였으나 기재부분의 하다 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구사보 (이하 이 조에서 "법원자무관등"이라 전 장구를 하였다는 집원사무관등 이라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다한 지수의 일을 알려야 한다. 일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배밀유지명성되는 시점까지를 밟은 자에 대한 제판이 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청구를 밟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등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을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을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을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3. 3. 14.]	

법제처 7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9조의7(손해배상의 보장) ① 개인 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 3. 1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2.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자3. 다른 법률에 따라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준비금을 적립한 개인정보처리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한다.<선설 2023. 3. 14.> [본조신설 2020. 2. 4.] [제39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39조의 7은 삭제 <2023. 3. 14.>]

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 이 그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24. 3. 12.> 1.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매출액등이 10억원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제15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주체(제15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주체(제15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주체(제15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주체(제15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가 일일평균 1만명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연도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정보주체의 수가 1만명이상일 것 입기준으로 정보주체의 수가 1만명이상일 것 입기준의 기관을 말한다고생기관 당시 기관을 말한다고 신설 2024. 3. 12.> 1 공공기관 다만 제2조제2호부터 제 옷 단세 된 되고 소리 되는 모든<신설 2024. 3. 12.> 1. 공공기관. 다만, 제2조제2호부터 제 5호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제32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 제32소세4명 즉 모에 에이어는 이이 관은 제외한다.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역 등 학안 단세 ③ 법 제39조의7제2항제2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2024. 3. 12.> 2024, 3. 12.>
1.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부터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저장・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 지지 않도록 게건 경보의 시청 한 된다 답무를 위탁받은 자
2. 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법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자
④ 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경우 최저가입금액(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최소적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다만, 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의 기준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3. 9. 12., 2024. 3. 12.> 12., 2024. 3. 12.> [본조신설<u>2020. 8. 4.]</u>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정 2020.2.4>

제49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0조세6항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1명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6. 7. 22.>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부의회의를 소집한다.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부의회의를 소집한다면 회의 날짜・시간・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조정부의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조정부의 장은 조정부 위원 중에서호선(互選)한다. 제40조(설치 및 구성)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 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 정도 눈생소성 기관시에의 포 0 + 0 + 1 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 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 성한다.<개정 2015. 7. 24., 2023. 3. 14.>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1.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이에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경험이 있는사람 14.> (4) 소성무의 상은 조정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이 정한다. 사님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당 제50조(사무기구) ①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분쟁조정 접수 및 사실 확인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처리는 보호위 원회의 사무기구가 수행한다.<개정 2020. 8. 2020. 8. 4.>
② 사무기구는 분쟁조정 접수 • 진행 및 당사자 통지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 쟁조정업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0. 8. 4.> [전문개정 2016. 7. 22.]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제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 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 였던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 닌 사람으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⑤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조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⑦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호석위원 과반수의 참성으로 의결한다.
⑧ 보호위원회는 분쟁조정 접수, 사실확인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5. 7. 24.>
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 디털 수 있다.<게영 2015. 7. 24.> ⑨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41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 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4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분쟁조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 "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 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이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		
床)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 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 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3.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분쟁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 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51조의2(조정 불응 의사의 통지) 개 인정보처리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 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분쟁조정에 응 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	
(2) 군영소성위원되는 당사자 필딩으로 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제51조의2(조정 불응 의사의 통지) 개 인정보처리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분쟁조정에 응 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 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분쟁조정 불응 의사를 분쟁조정위원회 에 알려야 한다.	
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 다.<개정 2023. 3. 14.>		
제44조(처리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		
아어 소청인들 식성아어야 한다. 다인,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 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 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법제처 74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 3. 14.>
③ 제2항에 따른 조사・열람을 하는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23. 3. 14.>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4.> (5)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3. 3. 14.>
[제목개정 2023. 3. 14.]

제51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조사・열람 등) ① 법 제4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기 구"란 제50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보호위원 회의 사무기구를 말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제2항 에 따라 조사・열람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7일 전까지 조사・열람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 다. 다만, 조사・열람 목적을 침해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1. 조사・열람의 목적 2. 조사・열람의 기간과 장소

조사·열람의 조사·열람의 조사·열람을 조사·열람을

목적 기간과 장소 하는 사람의 직위와 조사・ 3. ^조성명

4. 조사・열람의 범위와 내용 5.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열 람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6.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열람을 거 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불이익의

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불이익의 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불이익의 가 명하는 가 열 함께 필요한 사항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조사・열람을 할 때에는 분쟁 당사자 또는 분쟁당사자가 지명하는 자가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12.]

제6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호위원회(제62조제3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와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수 있다.<개정 2020. 8. 4., 2023. 9.

12.>
1. 법 제7조의9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무
2.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법 제공을 위한 시스템구축 등 제반조치 마련 및 지원에 관한사무

3. 삭제 < 2023. 9. 12.>

3. 삭제<2023. 9. 12.>
4.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5.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검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에 관한 사무
7. 법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7. 법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 제 | 47조 및 제49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 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와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0.

법제처 75 국가법령정보센터

	0 4 2022 0 12 5	
	8. 4., 2023. 9. 12.> [본조신설 2014. 8. 6.] [제목개정 2020. 8. 4.]	
제45조의2(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 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소송(해당 조정 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에서 원용 (援用)하지 못한다.		
제46조(조정 전 합의 권고) 분쟁조정위 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		
제47조(분쟁의 조정) ① 분쟁조정위원 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제51조의4(조정안에 대한 거부 의사 통지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할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하여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안을 가루하려는 건으로 본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조정안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편,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그 의사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12.]	
제4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 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 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 야 한다.		

정모수세에 내한 모장계왹석들 작성아 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제4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의 정보주체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정보주체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①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조정절차 등) ①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로 저하다	외하고 50명 이상일 것 가. 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 주체 나.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 절 차가 진행 중인 정보주체 다. 해당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정보주 체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제53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① 로 정하는 기간 "이란 14일 이상의 기간 일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 기간 을 말한다. ② 법 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분쟁조정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에 게 지장 설치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에 게 자하는 방법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 재하는 방법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 자하는 방법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 자하는 방법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 자하는 방법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거 지장(이하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 전(이하 "집단분쟁조정 (이라 한다)의 당 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 리자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법 제49조제2항 후단의 공고기간에 서로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집 단분쟁조정 당사자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집 단분쟁조정 당사자 참가 신청을 받이다 제1항의 신청기간이 끝난 후 일려야 한다. ② 분쟁조정 당사자 참가 신청을 받이다	
고보고 등 한 기 등 보 등 한 기 등 보 등 한 기 등 한 기 등 한 기 등 한 기 등 한 기 등 한 기 등 한 다. 전 50조의2(개선의견의 통보) 분쟁조정 위원회는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보호위원회 및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2020.2.4>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 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기기	
1. 「소비사기본법」세29조에 따라 공 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 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	
의 권익증진을 추된 목적으로 하는 단 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른 등 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기 전체의 정확권구기 1천 3 이 3 로 기	
세소공의 세기를 요정받을 것 나.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 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 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제52조(전속관할) ① 단체소송의 소는	
피그이 즈티 ルロ人 떠느 여어人가 이	
101 4 914	
② 제1항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53조(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병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제54조(소송허가신청) ①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소송허가신청) ①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정보주체의 침해된 권리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제기단체가 제51조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2.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소명하는 자료 2.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 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음 을 증명하는 서류	
제55조(소송허가요건 등)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을 것 2. 제54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②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항 수 있다	
2. 제34조에 따른 조동어가신성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②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56조(확정판결의 효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51조에 따른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 2.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대3/또(인사포증립)의 역중 등) (1)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 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 용한다. ② 제55조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 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 4편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③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장 보칙 <개정 2020.2.4>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8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3. 14.> 1. 삭제<2023. 3. 14.>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3. 삭제<2023. 3. 14.> 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②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제15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7조제1항・제2항,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3. 14.>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8조의2(적용제외) 이 법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아니한다.	제29조의3(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이 결합된다는 등) 결합 전원기 관에 가명정보의 결합되었다. 이 변경 보반출 등) ① 을 합한시하다는 한 인정보시리자 간 가명정 기관에 가명정보의 결합 인정하다려는 한 인정보시리자(이하 "결합신청자"라 한 인정보시리자(이하 "결합신청자"라 한 이 기가 인정보시리자(이하 "결합시에 다 가관에 제출해야 한 등 결합 대상 이 기관에 가명정보의 기관에 무취하는 보호위원회가 관리 기관에 무취하는 보호위원회가 관리 기관이 이 경목요하되는 모르는 보호위원회가 관리 기관 이 기관 이 기관 이 기관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법제처 8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0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1. 제7조의8 및 제7조의9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업무 2. 제28조의3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업무 및 전문기관의 업무 3.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중 업무 및 전문기관의 업무 4. 제33조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5. 제3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문기관의 지정업무 및 개인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업무 및 개인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업무 및 개인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업무 및 개인정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시행일: 2024. 3. 15.] 제60조제5호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치	제58조(개선권고 및 징계권고) ① 법 제61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법 제65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공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법령이나 조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정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가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4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기반자기관의 기관의 가인정보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점검을 할수 있다.	제30소제2항・제3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법 제65조제2항・제3항에 따른 징 계권고는 권고 사항, 권고 사유 및 조치 결과 회신기간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 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는 권 고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권고 내용대로 조치하기 곤란하 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① 개인 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 없는 사람은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개정할수 있다. 이 경수 전문기관을 개정한 수 있다. 기원에 다른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신고의 접수 사상됨 2. 사실의 조사·확인 및 관계자의 의 견형취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딸린업무 ④ 보호위원회는 제3항제2호의 사실조사·확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식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민원이 접수된 경우3. 그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성하는 경우2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과계인의 사무소나 사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지 기관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지 기반되었다.
기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한다.
기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한다.
기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한다고 이를 관계인에게 대용을 위하여 다음 가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20. 2. 4.> 보호위원회는 이 법 등 개인정보보여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있다.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 3. 14.>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
④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3. 3. 14.>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23. 3. 14.> .안 사용는 모모뒤권외가 정하여 고시 : 수 있다.<개정 2023. 3. 14.>) 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 -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자료 등을 |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 |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해서는 아 | 된다.<신설 2020. 2. 4., 2023. 3. 0 어 (7)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 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 • 기술적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 다.<신설 2020. 2. 4., 2023.

제60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30., 2017. 7. 26., 2020. 8. 4.>
③ 삭제 < 2023. 9. 12.>
④ 삭제 < 2023. 9. 12.>
⑤ 삭제 < 2023. 9. 12.>
⑥ 삭제 < 2023. 9. 12.>
⑦ 삭제 < 2023. 9. 12.>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① 보호위원회는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아니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정보보호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다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른 건을 권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권로를 보인하는지 여야하며, 그 이행 결과를 보보호위원회에 막은 기원회에 막은 기원회에 막은 기원회에 막은 시정권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 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말한다)을 받은 자기해당 권고를 수익한 때에는 제64조제3항에 따른 권고를 말한다)을 받은 자기해당 권고를 받은 자기 해당 권고를 말한다)을 받은 자기하는 기상자기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 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말한다)을 받은 자기해당 권고를 받은 자기해당 권고를 받은 자기하당 권고를 당하장이 따른 건사를 장상되는 본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14.]	
이 법을 위반한 자(충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1.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2.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2.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3. 3.	
14.> ③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을 위반하였을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은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야한다.<개정 2023. 3. 14.>	

||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 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 ||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나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2초의2체1항(제26초제8항에 따

다.

.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하려는 경우 전체 매출액에서 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다.

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유 규모의 개인 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유 규모,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상품・용역의 가격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

제60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해당사업연도"라 한다)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직전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대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출택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가.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나. 영업을 중단한 경우 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경우 및 나목에 준하는 경우 고,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및 법 제64조의 2제2항에 따른 위반행인

정말 두 있다.
⑤ 법 제64조의2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른 과징금이 사저기조과 사저정치는 별표 1이5와

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치 같다. [본조신설 2023. 9. 12.]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별표 1의5와

제6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6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부과금액・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금융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고려하여야 한다. 성이 항을 3.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

5.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위반행위와의관련성 및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의 규모
6.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및 고기 기업적 보체되지 있어 모형되다고 그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

모 고 8.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 보의 유형과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9.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9. 위반행위로 인한 성보수제의 피해 규모 10. 개인정보 보호 인증,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11. 보호위원회와의 협조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여부 호의 어느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가 아니할 수 있다. 1. 지급불능・지급정지 또는 자음 낼 하지 아니함 하지 아니한 경우 각관적으로 장우이 없는 경우 1. 지급불능·지급정지 또는 경우 1. 지급불능·지급정지 또는 지금을 바과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경우 2.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경우 1. 기 하였거나 경미한 경우 1. 기 하이에 따른 과징금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당하다. 기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 및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 및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를 되었다. 기 나를 기하였다.

역한 전형기군과 선정될사는 대통령형으로 정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⑧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독촉으로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과제7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⑨ 보호위원회는 법원의 판결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대장 함께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내 날부터 학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보호위원회는 제9항에도 불구하고 (10) 모호위원외는 세9양에도 출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 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12.]

제60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령 제7조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행정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9. 12.]

제60조의5(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 64조의2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이자율"이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법제처 86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조신설 2023<u>. 3. 14.</u>]

[본조신설 2023. 3. 14.]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 보호위원 회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② 보호위원회는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자(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을 포함한다)를 징계할 것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고할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등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0. 4.>

2020. 2. 4.>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발을 하거나 소속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에 프로

제66조(결과의 공표) ①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로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다른 2014 11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②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 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 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 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 에는 처분 등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 할 수 있다.<개정 2023. 3. 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사 실 등의 공표 및 공표명령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 정 2023. 3. 14.> 14.>

제58조(개선권고 및 징계권고) ① 법 제61조제2항・제3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법 제65조제2항・제3항에 따른 징계권고는 권고 사항, 권고 사유 및 조치결과 회신기간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는 권고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결과를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권고 내용대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2020. 8. 4.>

3.

- 있다. - 위반행위의 내용 - 위반행위를 한 자 - 처분등을 받았다는 사실 -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표하 하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공표할 성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 시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사 등을 고려해야 한다. - 보호위원회는 공표 또는 공표명령에 대한 심의・의결 전에 처분등을 받은 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에인의

법제처 87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7조(연차보고) ① 보호위원회는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기점 2016 13 20 2023 2014	
2016, 3, 29,, 2023, 3, 14.> 1.,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및 그 구제현	
2. 개인성보 처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의 결과 3.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추진현황 및 실적	
4. 개인성보 관련 해외의 입법 및 성적 동향 5.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관련된 법률・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 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네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입무의 처리 결과를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제62조(업무의 위탁) ① 삭제<2015. 12. 30.> 2. 30.>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대체가입수단 제공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30., 2017. 7. 26., 2020. 8. 4., 2022. 7. 19.>
1. 「전자정부법」제72조제1항에 따른한국지역정보개발원
2. 한국인터넷진흥원
3. 대체가입수단의 개발・제공・관리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기관・단체
③ 보호위원회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4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30., 2017. 7. 26., 2020. 8. 4., 2022. 7. 19., 2023. 9. 12.> 19.> 2023. 9. 12 19, 2023. 9. 12.2 1. 법 제7조의8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와 외국의 개인정 보 보호기구와의 교류·협력 2. 법 제7조의8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 2. 답 제/조크이에이오에 띄는 게 난 3 보호에 관한 법령·정책·제도·실태등의 조사·연구 3. 법 제7조의8제7호에 딱른 개인정보 3. 급 세/소의8세7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보급 4.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5. 법 제13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원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 육성 및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열람 요구의 6. 7. 업 세35소세2앙에 따른 열람 요구의 접수 및 처리 8. 법 제6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된 자 료제출 요구 및 검사 가.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 에 대한 기술지원 나. 법 제62조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신 고선터에 접수된 신고의 접수・처리 및 고.센 상담 상담
9. 제36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 른 신고 사항의 접수
④ 보호위원회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 7. 19.>
1. 한국인터넷진흥원
2.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
⑤ 보호위원회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나 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2. 7. 19.> [제목개정 2022. 7. 19.]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20. 2. 4.> ②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제 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20. 2. 4.>	
제10장 벌칙 <개정 2020.2.4>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처리한 자 4. 제2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5. 제2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5. 제2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6. 제28조의3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보라한 자 6. 제28조의3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구구우리를 보고하게 중앙행정기 관한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이 장으로부터 당정보를 결제8항에 따라 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이 자주의 3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26조제8항에 따라 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의 의 기관 외를 위반하여 가지 제28조의3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하여고 결합을 반출하거나 이를 외제3보를 기관 시장을 일반 기계 지공한 자 및 목적으로 결합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 시기 전용되는 경우을 알아보기 의 또는 부정한 무성하고 함께 보다는 무성하고 경우를 기반하여 업무상 입의 사장을 위반하여 입무상 입기 되게 되었다고를 가열하고 함께 되었다고 하다 되었다고 함께 되었다고 함께 되었다고 함께 되었다고 함께 되었다고 함께 되었다고 함께 보는 무성하고 되었다고 함께 보는 무성하고 되었다고 함께 보는 무성하고 되었다고 함께 보는 무성하고 되었다고 하다 되었다고 하다 되었다고 함께 보는 무성하고 되었다고 되었다고 함께 보는 무성하고 되었다고 함께 보는 무성하고 되었다고 함께 보는 무성하고 되었다고 되었다고 되었다고 함께 보는 무성하고 되었다고 되었다고 되었다고 함께 보는 무성하고 되었다고 함께 보다고 되었다고 되었다고 되었다고 되었다고 되었다고 되었다고 되었다고 되었	
8. 제28호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3. 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이용한 자	
지7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6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제37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3.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39조의4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하여게 제공한 자 4.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주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자 명령을 위반한자 지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자로제출 요구에 대하여 법위반사항제3조의4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자 1. 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주의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제출한자 5. 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주의 또는 축소할 무점으로 제공한다)에 따른 건무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자 5. 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주의 또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점근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다 기밀유지명령이 관심한 가입으로 제외한 가입으로 제외된다.	
입인 또는 개인의 내디인, 사용인, 그 밖이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다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의2(몰수・추징 등)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기하여 과할 수 있다.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5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25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 영한 자
2. 제25조의2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한다.
1. 제16조제3항・제22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2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이나 이용・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접속하는 방법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3조제2항・제24조제3항・제 지 아니안 자 5. 제23조제2항・제24조제3항・제 25조제6항(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준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의 4제1항・제29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 니한 자 니한 자
6. 제23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24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8. 제24조의2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의2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의2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아니한 자 아니한 자 이 기 는 시 10. 제25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 영한 자 영안 사 11. 제25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 1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기의 이글 되구 한파기에서 어디면 사 14. 제28조의8제4항(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u> </u>	
아니한 차 15. 제3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	
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16. 세33조세1항을 위반하여 영향병사□	
권외에 세울아시 아니인 Ar	
17. 제3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시 아니한 사	
18. 제34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무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 자	
19. 제35초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19. 제35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20.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 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구엥안 사 21 제35조이3제3항을 위반한 자	
22. 세36소세2항(세26소세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2. 제36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 니한 자	
1/3. 제3/소제3양 또는 제5양(제/b소제	
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지 아니한 자	
24. 제37조의2제3항(제26조제8항에 따	
24. 제37조의2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제2 조 제2항에 따라	
구에 따르시 아니안 사 25.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25.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지	
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6 제63조제2학/제26조제8학에 따라	
26. 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 입・검사를 거부 한 방 또는 기피한 자	
27.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 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TFOFI F	
1.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위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1.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위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자 2.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	
리인을 시성아시 아니안 사	
자에게느 1저마위 이하이 하테르르 브	
기원니. 1. 제 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과한다. 1.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자	
2. 세21소세3앙(세26소세8앙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21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를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4.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 로 하지 아니한 자	
다)를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4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언모 의타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	
5.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	
5.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 한 자	

한 자 6. 제27조제1항・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28조의4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8.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9. 제31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10. 제35조제3항・제4항, 제36조제2항・제4항 또는 제37조제4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1.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당한 사용 있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	
• 제35소세3명・제4명, 제36소세2명 • 제4항 또는 제37조제4항(제26조제 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1.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2. 제45조제2항에 따른 출입・조사・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보호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결과, 개인정보처리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3. 14.] [시행일: 2024. 3. 15.] 제75조제2항제 16호, 제75조제2항제	
28세21오, 세75조세28세24오, 세 75조제4항제1호, 제75조제4항제9호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6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수 없다.	